

서 면 답 변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질의의원	이 재 일
질의요지	◦ 시립중앙도서관 측면 계단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가 낮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바 ◦ 이는 건축설계의 하자 또는 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별도의 시재정 투입 사항이 아닌 하자이행보험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?
질의답변	◦ 중앙도서관 측면계단 높이가 90cm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4항 2호규정에는 85cm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◦ 계단에 설치된 난간높이에 대하여 설계 또는 시공상의 하자라 할 수 없으며, 시립중앙도서관신축 사업은 2004년에 종료되어 정산하였음 ◦ 이용자의 추락사고예방등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안내문을 부착하고,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난간높이부분에 대한 시설보안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
